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5. 27.(화) 12:00
2025. 5. 28.(수) 조간
배포 2025. 5. 27.(화) 09:00

인도네시아 ICT 수출이 빨라진다.

- 한국-인도네시아 ICT 분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1단계 시행
- 국내에서 인도네시아의 ICT 분야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도네시아 간 ICT 분야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ICT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시험(1단계) 및 인증(2단계)을 자국 시험·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간 협정

지난해 5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은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1년간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 관련 고시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2025.5.27. 제정·시행)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약 2.8억만, '24)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5.0%, '24)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최고 수준의 GDP(1조 3,570억 달러('24))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휴대폰, 태블릿, TV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24년도 ICT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이다.

세계 각국은 ICT 기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ICT 기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대상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5월 27일부터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시험기관은 2개소((주)넴코코리아, ㈜디티엔씨)이며, 올해 말까지 10여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시험기관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험 역량을 확인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향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서 발급 비용이 절감(기존 720만원 → 협정 후 480만원)되며, 현지 시장으로 신속한 진출이 가능해져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철 전파정책국장은 “한국-인도네시아간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차질없이 시행되었으므로, 국내 IC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하여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윤희봉 김 인	(044-202-4950) (044-202-4957)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주무관	김남승 이춘희	(061-338-4700) (061-338-473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상호인정협정 개요/ 한-인니 MRA 추진 경과

□ 상호인정협정(MRA) 개요 ※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개 요)** ICT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1단계), **인증서**(2단계)를 **자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간 협정**

⇨ ICT 기기 수출을 위한 **시험·인증 편의** 제고, **시장 조기 진출** 지원

〈 **MRA 단계별 국내기업의 적합성평가 절차** 〉

미체결	제조 (국내)	⇒	시험 (해외)	⇒	인증 (해외)	
1단계	제조 (국내)	⇒	시험 (국내)	⇒	인증 (해외)	
2단계	제조 (국내)	⇒	시험 (국내)	⇒	인증 (국내)	

○ **(체결 현황)** 한국은 **총 33개국**과 체결(1단계 32개국, 2단계 1개국)

- 1단계 : 미국('05), 베트남('06), 칠레('08), EU(27개국, '10), 영국('19), 인니('24)
- 2단계 : 캐나다('17)

□ 한국-인도네시아 MRA 추진 경과

연 도	주요 내용
'18년	▸ APEC TEL에서 MRA 체결을 위한 국가간 협의 착수 ※ APEC TEL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에 설립된 APEC 산하 실무 그룹
'20년	▸ MRA 협상 중단
'23년	▸ MRA 협상을 재개하여 주요 상호인정 내용 합의 ※ 양자회의('23.5월, 인니), APEC TEL('23.8월, 미국), 양자회의('23.11월, 한국)
'24년	▸ 한국-인도네시아 ICT 분야 협력의향서 체결('24.3.8) ▸ 한국-인도네시아 ICT 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24.5.27)

붙임2 **한-인니 MRA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2025.5.27 제정·시행)**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舊 통신정보부)가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상호인정) ①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디지털인프라총국(舊 우편 및 장치자원 총국)(이하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인도네시아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②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별표 1의 대한민국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대한민국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2.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에서 규제하는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제46호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자재

② 양국은 상호 통보할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

③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2
2. 제1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규정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별표 1에 기재된 각 대한민국 기술규정 또는 별표 2에 기재된 각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기술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험성적서의 언어)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언어는 상호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로 한다. 다만,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